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검 토 보 고 서



2025. 9.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

도시환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후환경과장)
- 발의일자: 2025. 9. 3.
- 회부일자: 2025. 9. 3.
- 검토기간: 2025. 9. 4. ~ 9. 10.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을 명시하고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법령과 중복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조)
- 용어 및 내용 개정(안 제7조)
- 관련 다른 조례 개정(부칙)

4. 참고사항

- 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9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7. 21. ~ 8. 11.):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을 명시하고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함.
- 안 제7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2021.1.5.)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1.7.6.)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던 계획의 기간을 삭제함.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2024.8.12.)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미반영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규정된 “대구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근거를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제12조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반영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의”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을 “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과한”을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구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환경보전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환경</u>”이란 <u>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u> 2. “<u>자연환경</u>”이란 <u>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u> 3. “<u>생활환경</u>”이란 <u>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u> 4. “<u>환경오염</u>”이란 <u>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u> 	<p>제1조(목적) ----- 「<u>환경정책기본법</u>」에 따라 <u>대구광역시달서구의 -----</u> ----- ----- -----.</p> <p><u><삭 제></u></p>

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달서의제21”이란 21세기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말한다.

제7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환경보전에 과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제7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

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

② ----- 환경계획-----

-----.

1. ~ 4. (현행과 같음)

5. ----- 관한 -----

-

③ ----- 환경계획-----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민이나 사업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관계 법령 】

□ 환경기본정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삭제 <2021. 1. 5.>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군의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시·군·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2021. 7. 6.>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군·구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 [제목개정 2021. 7. 6.]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군·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환경

2. 시·군·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구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